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찬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81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3. 22.

발의자 : 박찬대 · 김영진 · 박완주
허종식 · 최기상 · 강득구
김민철 · 김정호 · 유기홍
박성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유럽에서는 소비자 편의 및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스마트폰, 태블릿 등 휴대용 전자 기기의 충전 방식을 USB-C 타입으로 표준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음.

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전자 기기의 충전 방식에 관한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, 우리나라로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바일 · 스마트기기와 같은 방송통신기자재의 표준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, 생산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등).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원 낭비의 방지와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·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⑩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여야 한다.

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8조제10항을 위반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한 자에게 그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방송통신기자재 기술기준에 관한 적용례) 이 법 시행 당시 생산 중이거나 생산된 방송통신기자재는 제2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기술기준) ① ~ ⑧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8조(기술기준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 <u>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원 낭비의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·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</u> <u>⑩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여야 한다.</u>
제31조(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)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31조(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<u>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8조제10항을 위반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한 자에게 그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u>